

2022년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운영안내

2022. 2.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I 전년대비 주요 변경표

□ 전년대비 주요 변경표

구 분	2022년	2021년	비고
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오프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은 실시간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처치교육 실습은 집체교육 운영
교육 목표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목표인원에 따라 유동적 운영 (30회 내외, 1차시 7,000명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70회 (기본 240회, 심화 80회, 영아 50회) 	
교육 목표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심화) 200,000명 ※ 전 보육교직원(보수교육 이수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36,000명 이상(200인/1회) ※ 어린이집 1개소당 / 1인 이상 (심화) 4,000명(50인/1회) (영아) 2,500명(50인/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보육교직원 321,116명 (보육통계 '21.12월말)
교재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PDF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심화 과정 분권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교육 교재 미제작
강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콘텐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심화)강사료: 300천원 (영아)강사료 250천원 	
교육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미지원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운영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료 및 교육운영비 지원 다과비 : 700원(1인) 	
교육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산서, 강사료 영수증, 지출 영수증 등 첨부파일 보완 - 현금흐름 내역 증명서(이체확인증) - 문자발송 내역 등 첨부 	
교육 다양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기본, 심화)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어린이집 필수/의무교육(2종) 영아/유아 담당교사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 안전교육 	
안전교육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u>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u>. 2)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I.어린이집의 운영→라.안전교육→2)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전 보육교직원 이수 권장 		

II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22년 3월 ~ 12월
- 운영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LMS)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사이트 주소 : e.csia.or.kr(기존 안전교육시스템과 동일)
- 운영과정

연번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기본)	5월 ~11월	보육교직원	2시간
2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심화)	6월 ~11월	원장, 안전관리 담당교사	2시간
3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3월~11월	보육교직원	4시간 (이론2, 실습2)
4	개인정보보호교육	3월~11월	보육교직원	1시간
5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3월~11월	보육교직원	1시간
6	영아 및 유아 담당교사 안전교육(선택)	10월~11월	영아 및 유아 담당교사	2시간

□ '22년도 보육사업안내 관련사항

- 2022년 보육사업안내(p126)에 따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 전 보육교직원 이수 권장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기본과정, 심화과정 ※ 2과정 중 택1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기본, 심화) 이수 시 보수교육 연계 유지
 - 보수교육 중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과목 3시간 인정

□ 비 고

- 문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국 안전교육팀 임교은 과장
 - 유선전화(02-6902-2484), 메일(csia2631@csia.or.kr)

III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 교육 개요

- 교육명 :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 교육기간 : 2022년 3월 ~ 11월
- 교육방법 : 온라인 이론교육(2시간) + 집합 실습교육(2시간)
 - 이론, 실습교육 수료증 각각 발급
 - 실습교육(집합)은 공제회 강의실에서 진행
- 교육내용 및 교육비

구분	내용	교육비
이론교육	-응급처치 개요 -심폐소생술의 이해 -상황별 응급처치	무료
실습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영아·소아·성인) -붕대, 삼각건 등을 이용한 응급처치	2만원(교재, 교구 제공)

○ 교육 이수 방법

- (이수방법 1) 공제회 이론 + 실습 수강
 - ※ 교육효과를 위해 이론부터 수강 권장
- (이수방법 2) 공제회 이론 + 타기관* 실습
 - *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행정안전부-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
 - ※ 이론교육 수강 전 반드시 지역별 실습 교육기관 확인 필요

□ 협조 요청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응급처치교육 운영 시 공제회 이론교육(2시간) 활용
- 교육운영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별 '22년도 응급 처치교육 계획 회신요청(붙임 양식 참조, 회신 메일 : rbf19792@csia.or.kr)
 - ※ 교육실적 및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안전예방국 안전교육팀 윤규리 주임(02-6902-2476)

[주요 질의응답]

Q1.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이제 오프라인 운영이나 관련 예산 지원은 없는 건가요?

A1. '22년도는 모든 교육을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LMS)를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운영됩니다. 따라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실습은 집합교육

Q2. 교재는 언제 배포되나요?

A2.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교육은 실물 교재는 따로 배포되지 않으며 자료실 또는 교육 신청 시 첨부하여 PDF 형태로 제공됩니다.

Q3.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기본, 심화)은 온라인으로 2시간 교육인데 보수교육 3시간이 인정·연계 되나요?

A3. 네.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과목 3시간 인정이 됩니다.

Q4.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개설하거나 수료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A4. 공제회가 안전교육시스템을 통하여 교육신청, 수강, 수료절차를 통합 관리 운영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 개설이나 수료자 관리 절차는 없습니다.

※ 육아종합 관내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요청 시 별도 제공

Q5.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실습장소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강사 파견도 해주나요?

A5.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교육 실습과정은 공제회 강의실에서 운영 예정이며 강사 파견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Q6. 공제회 이론과정을 온라인 수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습을 수강해도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되나요?

A6. 지자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교육은 지자체 교육으로 인정되므로 응급처치교육 지정기관인 공제회 이론과정(2시간)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실습교육(2시간) 수강 시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단, 강사, 장비 등의 요건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9-2 참조)

Q.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외 국가, 관리주체 등의 어린이안전교육 실시가 가능한지?

A.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외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소속 종사자(강사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안전법」과 하위법령·고시에서 정한 강사 요건, 시설·장비 기준과 안전교육내용·방법 등을 준수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안전교육의 위탁 계약 등의 근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포함

- 소방서, 보건소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포함